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인공지능교육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실시 >

■ 김민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044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민전 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11. 10.
3. 회부연월일 : 2025. 11. 11.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사회전반에서 혁신을 이끌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있음.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능력과 인공지능윤리에 대한 소양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교원 또한 이를 교육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추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증진과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의 확립을 위한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본 소양과 윤리의식을 겸비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 Ⅲ. 검토의견

####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 또는 교원이 인공지능 기술 활용 능력 증진과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의 확립을 위한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제22조의6(인공지능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증진과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의 확립을 위한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 나. 검토의견

- 인공지능(AI)은 최근 국가와 사회, 산업 전 분야에서 새로운 경쟁력의 핵심 자원으로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되고 있음. 의료, 복지, 교통, 환경, 행정, 국방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인공지능은 효율성·생산성 향상, 문제 해결, 혁신을 가능케 하며, 향후 전 세계적으로 시스템과 생

활의 근본을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과 AI 주도권 확보에 국가적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정부도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기업·공공·국민 등 전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AI 대전환’ 사업을 통하여 ‘진짜성장’을 이루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음.

-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교육부 소관으로는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이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모든 학교에서 AI를 내실있게 교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 국민의 AI 이해·활용 역량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AI 교육 지원을 확대하며, AI 기반 고등교육 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초학문 및 인문학의 교육·연구 강화를 통해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AI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sup>1)</sup>

인공지능기술을 교육 분야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윤리적 문제 등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역기능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1) 대한민국 정부,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2025.

□ 이에 개정안은 인공지능기술 활용과 윤리 확립을 위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학생과 교육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과 윤리의식을 겸비한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교육부는 교원의 AI 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주제별·수준별 집중 연수를 실시하고,<sup>2)</sup> AI 중점학교, STEAM 클럽 및 AI 교육 체계화<sup>3)</sup> 등 AI 교육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이 학교 교육을 통해 AI를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다만, 개정안은 학생과 교원에 한정하여 이들에 대해서만 인공지능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교육기본법」의 취지는 모든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으로,<sup>4)</sup>

---

2) 교육부는 '26.3월까지 교원에 대한 연수 프레임워크 개발 완료 후 '26.5월부터 연수를 실시하여 '29년까지 1만명의 교원에 대한 연수를 완료할 예정임.

3) AI 중점학교: 일반학교보다 정보교과 시수를 확대 편성·운영하고 AI·융합동아리, AI 진로 체험 등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목표 : '26년 1,000개교 → '27년 1,500개교 → '28년 2,000개교)

STEAM(Science·Technology·Engineering·Arts·Mathematics) 클럽 :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STEAM 클럽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25년 332팀 → '26년 1,540팀)

AI 교육 체계화 : 학교급별 AI 교육 체계화를 위한 정책연구 추진, 교육과정 개정안 마련 및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과정 개정 요청

4)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관련 조문에서는 특정 대상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현행법의 관련 규정 ]

| 조문 제목              | 조문 내용                                                                                   |
|--------------------|-----------------------------------------------------------------------------------------|
| 제3조(학습권)           | <b>모든 국민</b> 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 ① <b>모든 국민</b> 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 제8조(의무교육)          | ② <b>모든 국민</b> 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               |                                                                                         |
| 제17조의5(생명존중 의식 함양)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b>모든 국민</b> 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존중에 관한 건전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 제22조의3(진로교육)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b>모든 국민</b> 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 제29조(국제교육)         | ① 국가는 <b>국민</b> 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

□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모든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학생과 교원에 한정하여 인공지능 교육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대구교육청은 인공지능교육과 관련한 내용은 현행법이 아니라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실제적 목적 달성에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서울교육청은 현행법 제22조의5(스마트기기 사용교육)와 제23조(교육의 정보화)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불필요하다는 의견임.<sup>5)</sup>

|              |
|--------------|
| 문 의 처        |
| 02)6788-5188 |

---

5)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교육의 정보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정보산업을 육성하는 등 교육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화교육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타인의 명예·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윤리적 기준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